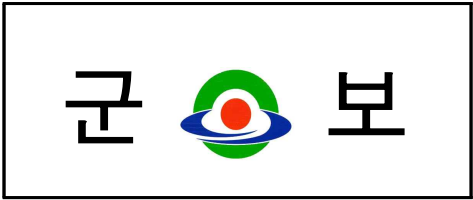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03호 2025. 4. 7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 하천점용 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5-43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4월 7일

예 천 군 수 (인)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	예천군 체육사업소장
주 소	(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)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76-5번지
점용면적 (허가량)	826㎡
점용목적	토지의 점용
사업개요	한천 풋살장 복구공사
점용기간	2025년 4월 7일 ~ 2025년 5월 31일